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13
----------	------

2023년 12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3일, 김춘곤 의원(찬성자: 2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8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곤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함.(안 제34조제1항제8호)

-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물재생 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¹⁾에 따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

현행	개정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u>부지경계선으로부터</u>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u>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u> 300미터 이내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물재생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1과 같다.

현행	개정안
9. - 15. (생략) ② - ④ (생략) <u><신설></u>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u>

■ 부지경계선 300m 이내 거주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추진현황

-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는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06.01.05.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8호를 신설²⁾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오던 것을 '09.10.01.일부터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혜택을 확대³⁾하면서 이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임.
- 이에 따른 최근 5년간('19년~'23.8월)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3,650가구에 12억 5천만원⁴⁾을 감면([표 2] 참조)해 주고 있었는데,

2) [시행 2006. 1. 5.] [서울특별시규칙 제3473호, 2006. 1. 5., 일부개정]

3) [시행 2009. 10. 1.] [서울특별시조례 제4809호, 2009. 7. 30., 타법개정]

4) '23년도의 경우 1월~8월까지 집계

[표 2] 최근 5년간('19년~'23년)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 현황※
(단위 : 가구수/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8	연평균
감면대상수 (수용가 등)	14,254	14,255	14,397	12,692	12,652	13,650
감면액 (천원)	1,357,000	1,413,280	1,388,037	1,288,809	800,595	1,249,544

※ 2021~2023년도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참고

- 지난 4월 물순환안전국이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를 벗어나는 가구들(352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상수도사업본부⁵⁾에 요청⁶⁾하였고,
- 이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조례안 주요 조문별 의견

- 안 제34조제1항제8호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을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으로 규정함으로써,
 - 부지경계선이 축소된 경우에도 기존에 하수도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던 가구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유지케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5) 물순환안전국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부과에 대한 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하고 있음.
6) ‘물재생센터 인근 하수도 요금 감면 수혜대상자 재확인 및 감면 재조정 요청’, 물재생계획과-5979, 2023.4.20.

-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가 최초 신설되었던 취지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고, 그 시설의 용량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증가([표 3]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부지경계선이 축소되었다는 것만으로 기존의 감면혜택을 받던 가구가 악취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짐.

[표 3] 물재생센터별 부지면적, 시설용량 현황 비교

구분		중랑		난지		서남		탄천	
		최초설치일 (’76. 4. 8.)	’23. 10	최초설치일 (’86. 9. 16.)	’23.10.	최초설치일 (’86. 8. 16.)	’23. 10.	최초설치일 (’87. 12. 9.)	’23. 10
부지면적(천㎡)		441,313	801,503	929,000	929,000	628,575	905,825	403,600	392,671
시설 용량	하 수 (만㎥/일)	15	159	100	86	100	163	50	90
	분 뇨 (kL/일)	800	4,000	1,000	4,500	2,000	4,000	-	-

※ 서울시 물재생센터 최초 부지면적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참고

- 따라서 동 개정안과 같이 최초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악취 영향권이라고 판단되었던 기존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다음으로, 안 부칙 제1조는 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확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공포 후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2024년 4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 시스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절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안 부칙 제1조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4] 수정의견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신설>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제2조(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동 개정안의 시행 이전에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안 제34조제1항제8호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받던 가구 중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을 원인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새로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소기가 있는 가구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면제 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이와 관련된 판례⁷⁾를 살펴보면, 오히려 대상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 해당 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급입법은 적절하다 할 것임.
- 다만, '09.10.01.일 이후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 일부 축소 변경으로 당시 물재생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 새로이 전입해 온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징수해 왔던바,
-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급하여 환급 조치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거주지 변경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곤란하여 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임.
- 행정적으로 소급적용 대상을 특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나,
-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초 현행 조례 제34조제1항제8호가 신설된 사유가 물재생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용량이 지속해서

7)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 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던 또는 거주하는 시민이 받은 불이익이나 불편을 지금이라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라 여겨짐.
-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4월 최초로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부지경계선 조정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었던 가구에 대해서 동 개정안을 소급적용할 경우 징수되었던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을 위해 약 3천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⁸⁾하고 있는데,
- 지난 11.01일 제출된 2024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에서 '04년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가 약 8,518억 24백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예산 소요액이 하수도사업 운용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8) ○ 산출내역 : 372만원* × 10개월 = 3천 7백만원

* 물재생센터 인근 감면지역 조정으로 감면이 중단된 수용가는 352가구로, 해당 수용가의 월평균 감면금액 약 3,720,442원을 기준으로 추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확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13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12월 19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 확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징수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 등에 필요한 절대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4년 4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4월 1일부터로 함. (안 부칙 제1조)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2조(적용례) 제34조 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u>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u> 제2조(적용례)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8호 중 “부지경계선으로부터”를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 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u>부지경계선으로부터</u>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u>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u>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u>